

**결의안 20-109호**

**코로나19와 그의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글렌데일 비상사태권한에 의거하여  
주거용 퇴거유예와 관련된 공공명령을 발령한  
과거 결의안을 수정하고 연장하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의 결의안**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18일,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임대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주거용 임대인과 상업용 임대인에 대한 퇴거를 금지하는 유예를 설정한 공공명령 3호를 발령하였고, 2020년 3월24일 시의회가 수정하고, 인준하고, 연장하였고 퇴거유예에 대한 14일 통지서 수정안을 추가하였다.

2020년 3월27일, 주지사는 세입자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월세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납부일 이전이나 이후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기간 내에 집주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 주거용 세입자가 퇴거소송에 대응할 시간을 연장하는 행정명령(N-37-20)을 발령하였다.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는 만기된 월세를 납부할 때, 집주인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가 나오고, 시의 14일 통지조건을 대신하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0년 4월 6일, 캘리포니아 사법의회는(CJC) - 주법원에 대한 행정권- 주지사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비상사태선포의 해지를 선포하고 90일까지 퇴거소송 소환장의 발급을 금지하는 비상사태령을 발령하였다. 퇴거가 보건안전에 필수적인 경우는 예외이며 또한 기존의 사건을 최소한 60일까지 연장하였다.

2020년 4월 8일,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은 주거용 퇴거에 관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따르게 하는 퇴거유예명령을 수정하고 또한 퇴거소송을 연기하고 집주인이 미납 월세에 대한 연체료, 수수료, 이자의 부과나 수금, 혹은 연기된 월세를 수금하기 위한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사법회의의 명령을 수정하는 공공명령 6호를 발령하였다.

2020년 4월 14일, 결의안 20-41호에 의해 시의회는 퇴거유예에 대한 원금회수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공공명령 6호를 인준하고 확대하였고 공공명령 퇴거유예를 2020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결의안 20-53에 의거하여 2020년 5월 12일에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그리고 결의안 20-92에 의거하여 2020년 6월 30일에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많은 주민들이 업소 폐쇄나 제한, 근무시간 손실이나 급여 손실, 혹은 코로나와 관련된 해고의 결과로 상당한 수입의 손실을 겪고 있으며, 임대료를 계속 낼 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퇴거에 취약하게 된다.

위험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므로, 과거 결의안과 공공명령 만료일의 연장이 필수 불가결하고 공중 보건과 안전 보전을 위해 추가 보호를 채택해야 한다.

### **글렌데일 시의회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항: 주거용 퇴거에 대한 퇴거유예를 시행하는 비상사태 공공명령과 관련된 결의안 20-92호는 다음과 같이 이에 연장된다.

주거용 임대에 관한 퇴거유예. 전례없는 이 비상사태동안, 글렌데일 주민에게 구호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용 임대에 대한 퇴거유예를 2020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아래 2항에 정해진 수정안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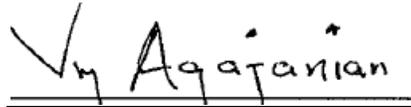
2항. 2020년 8월 1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임대료부터, 그리고 이 비상사태 공공명령이 남은 기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자가 월세 전액이나 일부분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 납부일까지 집주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한다. 세입자는 문자, 이메일, 편지를 보내서 집주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납부 불능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집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해고통지서, 급여수표, 월급명세서, 은행내역서, 의료비 고지서, 육아비 고지서, 혹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육아비용의 납부를 증명하는 기타 문서, 혹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자가 납부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세입자의 바뀐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고용주나 슈퍼바이저가 서명한 편지나 진술서이다. 한번 의사소통으로 통지서와 서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를 일부분을 납부할 것을 권한다. 이 요건은 과거 월세를 연체한 당시의 비상사태 이전 명령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2020년 8월 1일 이전의 월세 연체에 적용하지 않는다.

3항. 공공명령이나 적용이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하는 경우, 그러한 무효판결은 무효한 조항이나 적용없이 유효한 명령이나 이 결의안의 관, 항,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것으로 각각 구절, 항, 문장, 혹은 단어는 분리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4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시 검찰청에 회부한다. 경찰관은 각자 재량으로 이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유념한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원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되며, 이에 규정된 집행절차와 함께, 첫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의 벌금, 세번째 소환장은 \$2,000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5항. 이 결의안과 해당 명령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나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더 엄격한 제한사항을 대신하지 않는다.

2020년 7월 21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함



시장

증명함



시서기

캘리포니아 주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 SS.  
글렌데일 시 )

본인, 아람 아제미안 글렌데일 시 서기는 전술한 결의안 20-109호를 2020년 7월 21일에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의회가 채택하였고 동일한 내용이 다음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이에 인증한다.

찬성: 브룩맨, 드바인, 카사키안, 나자리안, 아가제니안  
반대: 없음  
결석: 없음  
기권: 없음

양식에 승인함



시서기



시검사

날짜 7/24/2020